

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시행('22년 1월)



가입 대상

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**학생신분의 연구자**

- 대학 ·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재학생
-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, 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



신고 기한

대학 · 연구기관 등은 매학기 시작 **"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"** 제출

- 1학기 4월 15일까지, 2학기 10월 15일까지

* 다만, '22년 1월 시행 당시 학생연구자는 '22. 2. 15.까지 신고

학기 중 학생연구자 추가해당 또는 비해당 시 **"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"** 제출

- 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



산재 보상

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

* 산재보험급여의 종류: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



고용노동부



근로복지공단



1588-0075



www.comwel.or.kr